

영등포구의회
제150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09. 12. 3.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제안일자 : 2009. 11. 17.
- 제안자 : 영등포구청장

■ 개정(제안) 이유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이용료 감면규정을 반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촉진하며, 또한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사용료 감면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혜택을 줌으로써 각종행사와 생활체육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구민체육센터 개인사용료 및 대림운동장 사용료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사용료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개정(1~3급은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안 제8조제2항 별표2 및 별표3)

- 구민체육센터 사용료 중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행사 개최 시
 - 영등포구 주관 및 구청장기 대회 등 행사 개최 시 100분의 100을 감면
 - 생활체육회 소속 연합회단체 주관행사 등 개최 시 100분의 50을 감면
(안 제8조제3항 별표 4)

■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호가목

■ 타 자치단체 조례개정 현황

-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 15개 자치구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이용료 감면규정을 반영하고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그 내용을 보면,
- 구민체육센터 개인사용료 및 대림운동장 사용료 중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인의 사용료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개정하고자 하며(1~3급은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안 제8조제2항 별표2 및 별표3)
- 구민체육센터 사용료 중 영등포구 주관 및 구청장기 대회 등 행사 개최 시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생활체육회 소속 연합회단체 주관행사 등 개최 시 100분의 50을 감면(안 제8조제3항

별표 4)하려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 부칙에 [별표 4]의 비고 제3호 생활체육회 소속 연합회단체 주관행사 등에 대하여 사용료 감면규정의 신설은 공직선거법과 관련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 12. 3.

보 고 자 : 이 남 식

【참고자료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제3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641호, 2009.7.27, 일부개정)

제17조 (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려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별표 2] <개정 2008.2.29>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7조 관련)

시설의 종류	감 면 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가. 무궁화호·통근열차 나. 새마을호	100분의 50 100분의 50(1~3급 장애인) 100분의 30(4~6급 장애인) (4~6급 장애인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만 감면된다)
2. 도시철도(「철도사업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기철도를 포함한다)	100분의 100
3. 공영버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만 해당한다)	100분의 100
4. 국공립 공연장	100분의 50

5. 공공체육시설(국가등이 설치·관리·운영하는 시설 중 생활체육관·수영장·테니스장·스키장만 해당한다)	100분의 50
6. 고 궁	100분의 100
7. 능 원	100분의 100
8. 국공립의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9.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비 고

1. 철도 등 운송수단은 여객운임만 감면된다.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09. 1. 8 일부개정)

제10조(사용료의 감면) 2. 별표 2 제2호의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06.07.19, 2009.01.08)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 100분의 50 감액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00분의 30 감액

다. 주 3회 이상의 프로그램을 2개 이상 동시에 수강하는 자에게는 수강료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수강료를 감면하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잠실 제1·2수영장 및 창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수강료의 100분의 10을 감액한다.

마. 계절별, 시간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강료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 공직선거법(법률 제9466호, 2009.2.12, 일부개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기간 동안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4호의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 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거나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 개시일 전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3.12, 2005.8.4>

1.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전 1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2. 제1호외의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5.8.4>

1.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확대·변경하는 경우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석한 장소 또는 행사에서 행하는 경우

3.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4.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